

17.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5,816호 1999. 2. 5

개정이유

하도급거래에 있어 어음결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어음만기일의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과 수취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결재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재하도급의 범위를 위반하여 거래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2조제9항).
-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법 제3조제1항).
-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위탁과 관련하여 결제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함(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
- 라.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해

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14조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도급한도액”을 각각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하고,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이 법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 수리 또는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중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항 및 제6항”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증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중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5항”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으로, “동조제4항 및 제6항”을 “동조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원사업자”를 “발주자·원사업자”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부 칙

①(t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도급계약이 체결된 부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부도급계약이 체결된 부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